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5
----------	---------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일

발 의 자: 송순효, 박성호, 황동현, 강선영
이충현, 김현희, 김성한, 윤유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보조금 지급 및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31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나.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다. 입법예고: 2020. 6. 5. ~ 2020. 6. 9.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 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과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남북교류협력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